

군포시의회 공고 제 2021 - 23호

군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홍경호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3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1년 8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39,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js9695@korea.kr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 조례명 : 군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 ☐ 성명(단체명) :
- ☐ 주 소 :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군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홍경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21. 8. .

발 의 자 : 홍경호, 성복임, 장경민,
이전행, 신금자, 이길호,
이희재, 김귀근, 이우천

1. 제안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군포시에 정착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제2조)
- 나.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협력에 관한 규정(안 제3조~제4조)
- 다. 안전계획 수립·시행 및 사업추진에 관한 규정(안 제5조~제6조)
- 라. 시범구역 조성 및 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안 제7조~제8조)
- 마. 주차시설 설치 및 무단방치 금지에 관한 규정(안 제9조~제10조)
- 바.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 사. 예산 지원 및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안 제13조~제14조)

3. 관련법령

- 해당없음

군포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군포시에 정착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군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 시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법의 규정에 따른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운행이 허용되지 않은 장소는 이용하지 않는 등 이용자 안전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6조(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대한 연도별 실태 조사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범구역 조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시범구역을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주차시설 설치) 시장은 시가 관리·운영하는 공공시설, 시내버스 정류장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장소 및 공원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무단방치 금지)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비치 및 안전모 보관함 설치

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

3. 이용 중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과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